2025년 『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』 시행계획 공고

전북도내 소재한 공공기관·연구기관·대학 등에서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이용 활성화로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"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"시행계획 을 공고합니다.

> 2025년 4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(재)전북테크노파크원장

1 지원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전북도에서 운용하고 있는「장비정보제공시스템」내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를 도내 기업이 활용 시 장비이용료를 보조하여 연구개발 활동 촉진 및 장비 활성화 제고

□ 지원대상 : 전북도 소재 중소기업

- ☞ "중소기업"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- ☞ 도내에 본사, 시업장, 기업부설연구소, 공장등록 중 1개 이상 소재 기업 또는 도내 창업 (기술)보육센터" 입주기업으로 신청 시 도내 주소로 접수한 기업
- *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공장
- ** 중소기업진흥공단, 대학, 국공립·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·기술 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

□ 지원범위

- 과학기술 **연구개발**이나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
- □ 지원규모: 총 44백만원

2 지원금 기준

□ 지원금 기준

○ 도비 지원금 : **총 장비이용료*의 80% 이내**(기업당 연간 **최대 300만원**까지)

* 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미포함

○ 기업 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20% 이상

3 신청기간 및 신청ㆍ지원절차

□ 장비이용 신청기간

○ 신청접수 : 2025년 4월 10일 ~ 2025년 12월 10일(**예산 내 종료**)

□ 신청·지원절차

○ 온라인 신청·접수 : 「장비정보제공시스템*」

* 접속 주소 : jbjangbi.jbtp.or.kr

○ 지원절차

장비이용신청	신청서 검토/승인	장비이용/결과제출	서류확인/지원금 입금
「장비정보제공시스템」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장비이용신청	장비신청서 검토 및 승인번호 발급 * 승인번호 안내 (선장기업→장비보유기관)	신청 장비 이용 및 이용료 완납/ 결과서류'온라인 제출 * 정비이용료 완납 증빙교함	결과보고서 확인 및 지원금 입금 * 선이용/완납 후 지원금 후지급 방식
신청기업	전담기관, 선정기업	장비보유기관-선정기업 ➡ 전담기관	선정기업 ↔ 전담기관

※ 승인번호 발급일자 기준 90일 이내 장비이용완료(복수장비 사용가능)

- (신청기업) 사업의 목적 및 범위에 준한 온라인 장비이용신청서 작성/신청
- (선정기업) 장비 이용 지원이 승인된 기업(승인번호 자동발급)
 - 전담기관에서 발급한 장비이용 승인번호를 기관의 장비의뢰신청서 또는 결과물(보고서)에 기재하도록 장비 보유기관에 안내
 - 장비 이용 후 <u>성적서, 결과보고서(장비지원이관 작성) 등</u> 및 장비이용료 완납증빙서류(기관 세금계산서 또는 고지서, 입금확인증 등),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시본을 「장비정보제공시스템」에 온라인 제출
- (전담기관)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기본요건 검토, 접수된 장비이용 신청서를 사업 목적 및 범위, 지원제외 항목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 승인 및 승인번호 발급, 선정기업의 결과서류 및 이용료 증빙서류 확인, 지원금 지급

4 신청 제외 및 숭인 취소사항

□ 신청 제외사항

- 신청자격이 지원 대상에 맞지 않거나, 신청내용이 본사업의 목적, 지원범위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기업이 장비이용 대상 아이템으로 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된 경우
 - 아이템 중복, 유사·복수 지원의 경우 제외됨
 - 연구개발사업 내 시험 분석료를 편성하여 장비이용 후 지출하는 경우
- 부도 또는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
- 정부 및 전북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
- 다른 기업으로부터 시제작, 시험, 인증 등을 의뢰받아 비용 청구 및 지급을 받는 기업이 본 사업에 신청한 경우
 - 반드시 신청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시생산 목적인 경우만 신청 대상임.

□ 숭인 취소사항

○ 최초 승인이후 장비 이용 지연 발생 시 선정기업과 장비보유기관에서 전담기관에 지연발생 내용을 안내하여 "승인취소"후 재신청 진행

5 유의사항

- 본 지원은 공공재정도비》이 투입되는 시업으로 '공공재정환수법('20.1.1.시행)'에 따라 지원금의 허위/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*이 부과됨.
 - *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(허위청구 5배, 과다청구 3배, 목적 외 사용 2배)

6 문의처

- (재)전북테크노파크 R&D기획관리팀 이근상 책임연구원(063-260-9324)
 - *「장비정보제공시스템」을 통해 장비별 담장자에 문의 가능 (jbjangbi.jbtp.or.kr)